

안세재정저널  
 회원용 · 2020년 10월 21일 (수) · 주간제 43호 · 통권 제 1489호 ·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달입니다 · 구독료 월 3000원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taxpark.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0/ 10/ 21 통권 1489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 CEO 에세이 – 이해와 원장

직원에 충분하고 정당하게 보상하라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성실신고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종 회계사 :  
대기업 근로자의 겸직창업준비와 겸업사업자의 독립  
과정 check point

##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시내출장비를 실비로 지급받으면서 월액의 자가운  
전보조금을 별도로 지급받으면 근로소득에 해당됨
-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성실신고 도움자료 최  
대한 제공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관련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OECD/G20 IF, 디지털세 논의 경과 보고서 공개
- 회계개혁 시장안착 지원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잔재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0.6.~11.15.)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주주 1인의 특수관계인 지분율 합산범위에 자기주식  
취득부분은 제외함 (p.12)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 1세대1주택 소유자인 대다수 국민의 일반양도, 부담부증여, 전액증여,  
사망상속 등 관련 세금의 비교 >

개념, 구분	일반양도	부담부증여	전액증여
재산세, 종부세	기존대로 납부	좌동(전액에 대해)	좌동
상대방 취득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자 1~3%</li> <li>• 1주택(비조정지역) 1~3%</li> <li>• 1주택자(조정지역) 8%</li> <li>• 2주택자(비조정지역) 8%</li> <li>• 2주택자(조정지역) 1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담부증여액 = 양도세 (왼쪽과 동일세율 8, 12%)</li> <li>• 증여부분금액 : 3.5% (다주택 · 3억 이상 1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간 무상 3.5%</li> <li>(형식적 소유권 취득)</li> <li>• 다주택자는 12%</li> <li>(3억 이상)</li> </ul>
본인 양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가 9억원까지는 비과세</li> <li>• 9억원초과액 ⊖ 비례취득원가 ⊖ 10년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 - 기본공제 250만원 = 양 도소득(세율 6~4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담부증여부분의 양 도세 (9억원까지 비과세 등 왼쪽과 동일)</li> </ul>	없음
증여세	없음	총시가-부담부(전세금 등) 0 = 차액에 대해 증여 세율 적용(10~50%)	전액 증여세율 (10~50%)
상속세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자녀일괄 공제 5억 등 적용 후 상속세율 (10~50%) 적용	주택시가 - 전세금 = 순상 속재산에 대해 공제액 적 용 후 상속세율 적용	총 상속재산에 대해 배 우자공제 자녀일괄공 제 등 최소 10억원 적용 후 상속세율 적용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타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489 호 / 주간 43호

2020. 10. 21. (수)

- 발행인 : 이윤선
- 제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 FAX : 02) 718-8565

## 목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 · 수도권 · 경기 · 인천  
전화:02) 829-7575  
팩스:02) 718-8565
- 부산 · 경남  
전화:051) 642-3988  
팩스:051) 642-3989
- 대구 · 경북  
전화:053) 654-9761  
팩스:053) 627-1630
- 대전 · 충청  
전화:010) 3409-2427  
팩스:042) 526-1686
- 수원 · 안산  
전화:010) 5255-6116

- ♣ 매월 구독 · 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198993-13-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안세 Taxpark의 차별화 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족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피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1세대1주택 소유자인 대다수 국민의 일반양도, 부담부증여, 전액증여, 사망상속 등 관련 세금의 비교	표지
긴급 시사해설	대기업 근로자의 겹직창업준비와 겹업사업자의 독립과정 check point	2
C E O 에세이	직원에 충분하고 정당하게 보상하라	3
세무·회계 상담자문 (님들은 무슨 고민할까?)	- 포괄적으로 대행업무계약 체결한 경우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함 - 조건부 판매의 경우 조건이 성취된 시점이 공급시기임 - 상법상 주주평등에 따라 주주간에 다른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음 -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해당됨	5
눈에 맞는 절세미인	시내출장비를 실비로 지급받으면서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별도로 지급받으면 근로소득에 해당됨	7
매일 절세재무요점	- 주택 재산세율 - 휴·폐업일의 기준	9 10
직장인 Survival	행동을 이끌어낸다	11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산학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기술자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기술자들에게 문화유산의 복원, 보존 기술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151, 2020.02.27) - 주한미군에 재화를 공급하는 미군납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재화가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증명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대상임	12 13
세정뉴스와해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6일까지 신고 납부…홈택스 더 편리해졌다	14
마케팅 Tax consulting	주주 1인의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범위에 자기주식 취득부분은 제외함	12
세무정보	-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성실신고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 텁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관련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OECD/G20 IF, 디지털세 논의 경과 보고서 공개	15 30 33
회계정보	- 회계개혁 시장안착 지원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44
노무정보	- 「산재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0.6.~11.15.)	46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8

# 대기업 근로자의 겸직창업준비와 겸업사업자의 독립과정 check point



박윤정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기업승계·증여·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개념구분	준비사항, 주의점, 해야할 일, 하지말아야 할 일, checkpoint
신규사업 도전 이유	직장생활의 한계점(승진경쟁, 정년 등, 종속성, 부분업무 등), 중도 퇴사의 가능성, 인사갈등요인 등
겸직창업분야	본인의 취미, 선호도, 경력에 적합한 분야 선정, 현 직장 동일업무는 근로계약상 퇴직 후 이해상충문제 있음
현 직장의 승인 등	이사의 경업금지(상법제397조),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금지), 근로계약상 근무시간 충실 의무 → 대부분 승인받기 어려움, 퇴근 후 자유시간, 휴일 활용
창업과 업무방법	주거지에 신규사업자 등록(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소규모법인 설립등기 → 온라인 · SNS활용한 판매, 도 · 소매(홈쇼핑 활용 등), 처음부터 대규모 제조 · 생산설비 · 원자재 자금이 필요없는 분야(컨설팅, 지식산업, 온라인유통, 도 · 소매, 중개 등)
광고홍보안내 판매촉진	도 · 소매를 위한 제품 · 상품의 안정적 확보(상품제공, 배달포장), 본인과 가족의 모든 온라인 광고 판매촉진 직접 수행, 유튜브 통한 구매 · 소비방법 안내 동영상(사업초기에 타인 채용시 영업방법유출, 인력이동, 장기간 고정인건비 부담으로 실패 가능성 높음)
회계·세금신고 등	매출, 매입거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3개월 단위 부가세신고, 6개월 단위 인건비와 4대보험 신고, 1년 단위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법인세 신고 등(본인 직접 수행 또는 회계전문가 외주)
겸업성공궤도 진입	① 성과가 낮으면 방향수정, 현 직장 계속근무, 또는 종결 후 다른 사업 구상, 재도전 ② 성과가 높으면 현 직장 사직 또는 부분근무 전환 후 겸업사업에 전입 진출함

# 직원에 충분하고 정당하게 보상하라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출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 윤윤수(Fila 코리아 회장), 이해익 공동칼럼

몇 년 전부터 연봉 18억원을 받는 월급쟁이 사장으로 필자는 유명(?)해졌다. 그러한 셀러리맨으로서 당연히 주장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셀러리맨들에게 충분히 그리고 정당하게 보상하라는 것이다. 충분하고 또 정당한 봉급을 주라는 말이다. 충분하게라는 말속에는 월급쟁이가 또래들과 비교하여 전혀 부러움 없이 살 수 있도록 봉급을 주라는 얘기다.

Fila코리아의 경우 급여 수준이 한국 기업 가운데 최상급이라고 생각한다. 보너스만 얘기하자면 1,200%를 받는다. 한국기업들 중 보너스를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도 많다. 기본급의 몇%, 본봉의 몇%하는 식으로 실속 없이 수치만 올려놓는 식이다. Fila코리아는 그렇지 않다. 총액의 1,200%다. 쉽게 말해 한 달에 두 번씩 월급을 받는 셈이다.

이렇게 직원들에게 대우를 후하게 해주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다른 생각을 미리 막기 위함이기도 하다. 회사에서 충분한 대우를 해주면 다른데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직분에만 충실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 말기에 지방 아전들의 횡포가 극심해 졌을 때, 정약용 선생께서는 <목민심서>에서 근본 대책을 제시했다. 아전들에게도 국록을 내리라는 것이었다. 국록이 없으니 백성을 쥐어 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은 요즘에도 적용된다. 경찰이나 세무공무원들의 비리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근본 이유는 하위 공직자들의 급여가 너무 낮다는 데 있다. 월급만으로는 힘드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교육자들의 촌지수수 문제도 같은 맥락이다. 싱가폴처럼 "충분히" 대우를 해 주어야 비리가 줄어들어 깨끗해 질 수 있다. 그렇게 셀러리맨들이 깨끗한 가운데 유능함도 더해져서 회사가 점점 잘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회사의 주주나 경영자는 어떻게 하면 임직원들에게 많은 봉급을 줄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 이제 짠 임금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경제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이미 오래 전에 지났다. IMF직전 부즈 앤런 & 해밀턴 보고서가 경고했다. 한국은 "비용의 중국"

과 "효율의 일본" 틈바구니에서 마치 호두끼는 기구(넛크래커, Nutcracker) 속에 끼인 호두 같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짠 임금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지식 경영에 힘쓰라는 경고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 기업들은 봉급과 보상에 인색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항상 사소한 문제에도 아웅다웅이 많을 수밖에 없다. 세상은 저만치 가야 하는데 70년대 향수에 빠져 있으니 "충분한" 보상이 한국기업의 오너 귀에 들어가기 힘들다. "정당하게" 보상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누구나 모두 똑같이 보상해서는 안 된다. 열심히 일한 사람, 실적이 많은 사람과 게으른 사람, 실적이 적은 사람을 똑같이 보상해서는 안 된다. 회사가 정한 목표와 질서를 지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보상을 받는 데서야 말이 안 된다. 상과 별이 뚜렸해야 한다. 과감히 보상하고 과감히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 기업은 생명체와 같다. 생성과 도태가 있게 마련이다. 무작정 오래 근무한 사람이 우대 받아서도 안 된다. 10년, 20년, 30년 근속상이란 것이 한국기업이 굽뜨게 되는 한 요인임을 냉철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다.

10년 근속보다 10년 업적이 중요하다. 무탈하게, 안일무사하게 지낸 직원이 10년 근속상을 탄 후 폭에 힘주며 행세하는 한국 기업의 풍토는 그야말로 코미디 깜이다. 근속상의 내용을 보라. 업적내용이 없다. "성실"하게 노예처럼(?) 근속해서 타에 모범이 된다는 내용이다.

둘째, 회사가 잘 되면 그만큼 직원들이 더 가져 가고, 못되는 만큼 못 가져간다는 원칙이다. 회사가 잘 되어 성장도 하면서 이익이 많이 나는데도 기업 오너는 비겁한 방법인 뒷구멍으로 챙기면서 업적이 있는 공로자와 직원들에게는 마지못해 국물냄새나 맡으라면 정당한 처사가 아니다.

억울하게 국민들만 짐을 지게되는 현실이다.

보상도 정당치 못해 왔지만 책임도 불가피하게(?) 형식에 머무는 것이 아닐까?



## 포괄적으로 대행업무계약 체결한 경우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함

**Q**

해외항공운임비를 국내 물류회사가 대납을 하였고, 해당 대납비용을 세금계산서 끊어 저희 회사로 발행 하였습니다. 이 때 해외항공비+대행료에 부가세 10%까지 처리 된 금액으로 발행 하였는데, 예) 해외항공비 1백만원

+ 대행료 10만원

+ 부가세 10%

= 총 121만원

해외항공비 관련해서는 영세로 처리를 해야 하지만 해당 업체는 과세업체로 부가세가 발생된다 하며, 부가세가 발생되더라도 추후 저희쪽으로 환급 받는걸로 처리 된다고 합니다.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A**

국내물류회사가 귀사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항공료 및 수수료 전체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반영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타당합니다.

## 조건부 판매의 경우 조건이 성취된 시점이 공급시기임

**Q**

검수조건부 공급과 관련하여 아래와같이 질문드립니다.

통상적인 재화의 공급은 인도일을 공급시기로 보나. 검수조건부 공급은 검수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화의 공급이 아닌 재화의 공급과 시운전이 동반되는 제작납품의 경우,

재화의 납품과 시운전을 한개로 보아 납품 후 시운전이 끝난 시기에 검수보고서가 발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재화의 납품과 시운전을 별개로 보아 검수보고서가 각각 발급되고 세금계산서 도 각각의 검수완료일에 발급되어야 하는건가요?

**A**

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시운전완료 조건계약의 경우라면 시운전이 완료된 시점이 공급시기이고 세금계산서 발급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 상법상 주주평등에 따라 주주간에 다른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음

Q

법인의 경우 배당금을 일부 주주에게만 지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일부 주주가 배당금을 포기하였다면 회계처리와 세무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상법의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해 모든 주주는 자신의 지분비율만큼 배당금을 받아야 하는데, 대주주가 자신의 몫을 소액주주에게 분배하는 차등배당의 경우에만 합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차등배당을 통해 소액주주가 추가로 받게되는 배당금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직원에게 지급하는 규정 있는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해당됨

Q

회사에서 퇴직연금 d/c 가입하고 있고, 금년 7월에 권고사직으로 직원 1명 퇴사하였습니다.

직원에게 퇴직위로금( 취업규칙 상 퇴직위로금 규정이 없음. 근로소득으로 처리함) 지급하였습니다.

질문>

- 1) 퇴직금 산출시 퇴직위로금 지급금을 포함 하여야 되는지. 아님 제외 하여야 하는지요?
- 2) 매년 d/c 퇴직연금(2019년까지) 100% 사외 예치 함>> 퇴직금 산출 방법?
- 3) 퇴직급 지급>> 총 퇴직급에서 2019년도 까지 사외 예치된 연금(d/c) 제외하고 지급 코자 합니다.

A

1.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명목의 모든 지급액은 퇴직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퇴직위로금도 규정 있다면 퇴직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회사에서 정한 기준으로 산출하면 되며, 사외 퇴직연금부분 이 외에 회사에서 직접 주는 위로금은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3. 회사에서 직접 주는 위로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회사에서 하여야 하므로 회사지급 위로금에 대해 귀사가 원천징수후 원천징수영수증을 DC형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되며, 연금사업자는 회사에서 지급한 위로금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최종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 시내출장비를 실비로 지급받으면서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별도로 지급받으면 근로소득에 해당됨

상담실 백종훈 차장

복리후생차원에서 종업원들에게 자가운전보조금 또는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러한 보조금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여러 상황에서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세무처리와 교통보조금의 세무처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 시내 출장 여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 하나,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시킨다.

### ♣ 서일 - 1016, 2005. 8. 29

비과세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종업원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 타인명의 및 공동명의 차량 이용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나,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가 적용되나,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 재경부소득-591, 2006.9.20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 개인차량을 회사업무에 사용하고 그 소요비용을 실비정산하는 대신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종업원이 자기의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소득세가 과세된다.

#### ♣ 소득46011-2665, 1993. 9. 6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임원을 포함)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그 실제 소요 경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 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소득인 것이며, 자기소유차량이 없는 자에 대한 월정액의 보조금은 동법령 동조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소득이 아닌 것으로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또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내출장비 등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출장비 등을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 2 이상의 회사에서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 ♣ 서면1팀-1272, 2006. 9. 14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자기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당해 회사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 장거리 출퇴근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보조금

종업원의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 여비 대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나,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과세된다.

# 365 매일 절세 재무 요점

- 안전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주택 재산세 서울

과세표준	세율
6000만원 이하	0.10%
6000만원~1억5000만원 이하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0.15%
1억5000만원~3억원 이하	19만5000원+1억5000만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0%



## 재산세 세부담 상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액 5% 이내
공시가격 3억~6억원 이하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액 10% 이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액 30% 이내



## ■ 휴 · 폐업일의 기준

구분	유형별	휴 · 폐업일
휴업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
	계절사업의 경우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봄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휴업신고서의 접수일
폐업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 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폐업 신고서의 접수일
	개시전 등록한 자가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6개월이 되는 날(부득이한 경우 제외)



## ■ ISA 세제혜택

구분	일반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일반 금융상품	이자 배당소득세 15.4% 부과	2.000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6.6~41.8%)
	가입기간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 순이익에 대해 -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금액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민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 400만원 초과금액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 행동을 이끌어낸다

6개월 후에 마라톤 풀코스 완주를 목표로 세웠다면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풀코스 완주는 하루아침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으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훈련량과 강도를 높이는 형태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획을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지 않는다면 목표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온 마음을 기울여 실천할 때 비로소 성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행동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동은 모호할 때보다 구체적일 때 실행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나만의 전문성을 담은 책을 쓰겠다'와 같이 명확하지 않은 목표는 실행되기 어렵습니다. 마감 시한도 없고 구체적인 행동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앞서 예를 든 '나만의 전문성을 담은 책을 쓰겠다'와 같은 모호한 목표보다는 '인터넷마케팅에 대한 실무형 도서를 올해 안에 1권 쓰겠다'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상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1년에 책 한 권 읽지 않는 사람이 한 권의 책을 쓴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 맞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달성하기도 어려운 계획입니다.)

계획은 장기, 중기, 단기로 세분화 하는 것이 실행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몇시간을 어떤 계획에 투입하면 되는지가 도출된다면 실행이 한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표마다는 마감시한이 정해져야 합니다.

목표를 실행할때는 유연성도 필요합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성공이란 없기 때문에 한 번 정한 목표라고 할지라도 중간마다 조정이나 수정을 반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해서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조율함으로써 원하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 최신판례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주주 1인의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범위에 자기주식 취득부분은 제외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주등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에 한정함

재산세제과-299, 2020.03.24

산학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기술자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기술자들에게 문화유산의 복원, 보존기술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151, 2020.02.27

## 질의

### 사실관계

- (주식의 포괄적 교환) 2016.6월 A법인의 자회사인 B법인과 C법인의주주들("자회사 주주")은 각 법인의 보유주식 전부를 A법인에 이전하고, A법인 주식을 새로 배정받음("포괄적교환")  
- 쟁점 포괄적교환으로 A법인은 완전모회사, B법인과 C법인은 완전자회사가 되고, 자회사 주주는 A법인의 새로운 주주가 됨
- (모회사 상장) 2017.5월 A법인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그로 인해 자회사 주주가 보유한 A법인주식 가액이 증가함  
◦ 자회사 주주가 모회사와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모회사 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모회사가 5년 내 상장된 경우  
- 당초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의3에 따른"최대주주등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 산학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이 진행하는 ODA 사업을 수행하면서 해외 현지 기술자들을 초청하여 국내에서 기술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회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이 발주하는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사업의 수행자로 선정되어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들에게 기술교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주등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에 재화를 공급하는 미군납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재화가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증명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대상임

부가가치세제과-159, 2020.03.25

## ■ 질의

주한미군에 재화를 공급하는 미군납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 회신

사업자가 SOFA(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인조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합중국 군대가 발급한 적절한 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증명한다면, 「부가가치세법」제 24조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함**

서면상속증여-1460, 2020.04.16

## ■ 질의

○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통해 아동수당 또는 육아수당을 지급받음

### 질의

○ 해당 금액을 미성년자인 자녀의 계좌로 매월 이체하는 경우(총 2천만원 초과)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준 해석사례 재산세과-54(2011.01.25.) 및 상속증여세과-47(2015.0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액을 미성년자인 자녀의 계좌로 매월 이체하는 경우(총 2천만원 초과)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재산세과-54, 2011.0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함

### ○ 상속증여세과-47, 2015.01.27.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2호에 따라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세무·회계·경영(TAM)장점뉴스 요약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6일까지 신고 납부… 흠텍스 더 편리해졌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인 개인·법인사업자는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올해 예정고지 대상 법인은 지난해 2기 예정신고 때보다 7만명 늘어난 101만명으로 해당 사업자들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자동으로 채울 수 있는 흠텍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무실적자'는 모바일 흠텍스(손택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

단순 오류라도 과소신고했을 경우 기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사업자에게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과 동일업종 평균 매출·매입 분석자료를 안내하고 있다.

17만개 법인에 대해서는 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최근 매출이 증가한 전자상거래 업종 등의 특성에 맞는 개별분석자료를 제공했다.

해당 사항은 흠텍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사기 등의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국세청, 소상공인 56만9000명 코로나19 세정지원…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국세청이 코로나19 세정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56만9000명을 부가가치세 2기 예정고지에서 제외했다고 13일 밝혔다.

예정고지 제외 대상은 올해 1~6월 사이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다.

고지 제외 사업자는 흠텍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25일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부하면 된다.

이 밖에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오는

22일까지 흠텍스를 통해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사업자와 중소기업(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 등은 21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이달 30일까지 환급세액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 디지털세 부과 최종방안 내년에 나온다… 코로나에 합의시점 연장

일명 '구글세'라 불리는 디지털세 부과 최종방안이 내년 중순 확정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가 디지털세 최종방안 합의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중반으로 공식 연장했다고 12일 기획재정부는 전했다.

IF는 올해 1월 기본골격 합의 이후 디지털세 관련 세부 논의 경과를 담은 중간 보고서인 '필라 1·2 블루프린트'를 이날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블루프린트는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 간 업종별 차별화를 두는 내용에서 일정 부분 진전을 거둔 점이 특징이다.

단, 최종안이 합의되더라도 디자조약 체결·비준과 국내 법 개정 등에 최소 2~3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과세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IF는 지난 1월 소셜미디어, 검색·광고·중개 등 온라인플랫폼, 콘텐츠 스트리밍 등 디지털서비스사업은 물론 기존 소비자대상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기본 골격에 합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디지털세 과세 시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 간 업종별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최종 합의 시까지 우리 측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과 같이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말한다.

현재 법인세는 기업의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부과가 가능한데, 디지털 기업은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영역이 생겨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세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성실신고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 국세청, 2020. 10

- (신고개요) 법인사업자 101만 명은 10월 26일(월)까지 202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직전기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하며 3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직전 과세기간('20년 1월~6월) 공급가액 4천만 원 이하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56.9만 명)하고,
  - \* '21년 1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예상('20년 신설 한시 적용)
  - 경영 애로 사업자가 징수유예·기한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합니다.
  -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조치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을 환급금을 10월 말 이내에 앞당겨 지급합니다.
- (사전안내) 납세자가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신고 유의사항, 맞춤형 도움안내자료\*,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확대 제공합니다.
  - \* ('19년 2기 예정) 58종, 15만 명 → ('20년 2기 예정) 59종, 17만 명(13.3% ↑ )
  - 특히,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신고 후 검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나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매입자납부제도 이행실태, ②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③ 부동산 임대업 등 점검



## 1. '2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는 10월 26일까지입니다.

- (신고개요)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020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붙임 1,2)
  - 이번 신고 대상자는 101만 명으로, '19년 2기 예정신고(94만 명) 보다 약 7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는 직전 과세기간('20. 1. 1.~ '20. 6. 30.)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합니다.
  - 10월 26일(월)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3%) 부담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됩니다.
    - \* 휴업 등으로 7~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붙임 3)
  -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신고 가능합니다.(붙임 4)
    -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 10. 1.~ 10. 26. 매일 06:00~24:00
-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2.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의 사전 안내를 확대하였습니다.

-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유형을 안내하니 단순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과소신고 가산세 : 부당 40%, 일반 10%, 납부지연가산세 : 1일 0.025%

유형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매출 신고 누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 확인</li> <li>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확인</li> <li>(현금매출) 계좌이체·핀테크 결제 등으로 받은 결제대금 확인</li> <li>(영세율)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관련 매출 확인</li> <li>(첨부서류)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영세율 적용 위한 필수서류 준비</li> <li>(겸업) 과·면세 겸업사업자 과세매출 적정 확인</li> <li>(차명계좌) 직원·친척 명의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의 신고누락 여부 확인</li> </ul>
매입 세액 불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금계산서) 폐업, 간이, 면세 사업자로부터 매입액은 공제 제외</li> <li>(신용카드) 사업 무관, 개인적 사용, 접대비 목적 사용액은 공제 제외</li> <li>(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렌트) 매입액은 공제 제외</li> <li>(이중 공제) 매입세금계산서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로 한 경우</li> <li>(겸업) 과·면세 겸업사업자 고통매입세액 안분 적정 확인</li> <li>(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제외</li> </ul>
부당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제 초과)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초과여부 확인 * 법인사업자의 한도율은 과세표준의 40%</li> <li>(매입처 확인)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재활용 폐자원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제외</li> <li>(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1%), 지역전송(0.5%) 확인</li> <li>(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연간 한도) 연간 1,000만원 초과여부 확인</li> <li>(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배제) 법인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 사업자</li> </ul>

◎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에게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sup>\*</sup>과 동일업종 평균 매출·매입 분석자료를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신고 변동 추세선·원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

◎ (개별 도움자료) 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수집·분석하여 최근 매출이 증가한 전자상거래 업종 등의 특성에 맞는 개별분석자료<sup>\*</sup>를 17만 개 법인에 추가로 제공합니다.(붙임 5)

\* ('19년 2기 예정) 58종, 15만 명 → ('20년 2기 예정) 59종, 17만 명(13.3% ↑ )

## &lt; 주요 안내 항목 &gt;

매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로페이 가맹점 매출자료 안내</li> <li>영세율 매출 신고내역 및 수출통관 분석 자료, 외환수취자료 안내</li> <li>대학병원 등 임상시험위탁용역 과세거래 안내</li> </ul>
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명품·귀금속 판매업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 매입 불공제</li> <li>부동산임대업자 신용카드매입세액 불공제</li> <li>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수취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li> </ul>
비대면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상거래 사업자 택배 매입액 분석을 통한 매출신고 안내</li> <li>배달앱·숙박앱 등 앱(app) 거래내역 안내</li> <li>플랫폼 운영사업자 지급수수료 분석을 통한 매출신고 안내</li> <li>SNS마켓 사업자, 전자결제대행업자(PG사) 성실신고 안내</li> </ul>

- (조회방법)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 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 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 할 수 있으므로,(붙임 6)
  -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소규모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 지원합니다.

- (세정지원)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의 납세편의 및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예정고지 제외) 직전 과세기간('20년 1~6월) 공급가액 4천만 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를 제외합니다.(56.9만 명)
  - \* '21년 1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예상('20년 신설 한시 적용)(붙임 7)
- 고지 제외 사업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조회 확인('조회내역 없음'으로 표시)이 가능하며, '20년 7~12월 실적을 '21.1.25.까지 한번에 확정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붙임 8)
  -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 (납세유예 신청) 그 밖에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도
  -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거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붙임 9)
  - (신청방법)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10월 22일(목)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 ② 신청/제출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환급금 조기지급)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조치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10월 21일(수)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신고월 말일 [10.30.(금)]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 당초 지급기한인 '20. 11. 10.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 4. 수출업체 등의 전자신고가 편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구매확인서 상시조회) 종전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에 필요한 구매확인서\* 발급내역을 홈택스를 통해 신고기간 중에만 제공하였으나,
  -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외국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
-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매월 수집\*(KTNET 수집)하여 홈택스에서 상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회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 전달 발급내역을 다음달 25일 구축(단, 신고월 1·4·7·10월은 15일 구축)
- 사업자는 신고기간 뿐만 아니라 상시로 홈택스 조회화면\*을 통해 발급내역을 바로 확인하여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접근경로) 홈택스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조회
- 또한, 구매확인서 발급내역\*을 홈택스에서 「파일생성」 기능을 통해 내려 받아 확인·수정이 가능하며,
  - \* 서류번호, 발급일, 외화금액, 원화환산금액, 공급일, 대표물품 등
- 최종 확인한 구매확인서 발급내역을 전자신고용 전산매체 파일로 변환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과세표준명세서 작성 개선) 사업자의 업종코드별 매출액을 입력하는 「과세표준명세서」 작성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재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전자신고 편의를 제공합니다.



- 단일 업종 사업자가 과세표준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표준명세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안내 팝업창이 생성되며,
  - \* ① 업종코드(사업자등록 기준 주업종)와 ②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란의 매출액 합계액(신고서 (9)번란)이 자동 채움
- 복수 업종 사업자는 과세표준명세서 작성화면 내 「나의 업종코드 조회」 버튼을 통해 사업자 등록 시 신청한 모든 업종을 한번에 확인한 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5.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 '20년 하반기 신고 후 검증 중점 추진분야 >

- [1] (매입자납부제도 이행실태) 철·구리 스크랩 거래 사업자는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여야 하나,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및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공급가액 10%)를 부과
  - 전자세금계산서 품목, 전용계좌 이상거래 패턴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철·구리 스크랩 등 거래 시 전용계좌 미개설 및 불성실 이용 혐의자 추출
- [2]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 판매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미수취 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영수증으로 정상거래를 위장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받은 유형\*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점검대상자 선정
  - \* 매입거래 상대방이 원거리 근로자, 미등록(일반 규모) 사업자, 해외출국자 등인 경우
- [3] (부동산 임대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매출누락·부당환급 유형에 대하여 검증
  - (임대수입금액 신고 누락) 임차인 사업내역, 가족관계 등을 분석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장을 무상 임대하고 무신고하거나, 임대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있음에도 무신고하는 경우 임대료를 확인하여 과세
  - (매입세액 부당공제) 매입세액 환급받은 임대사업장에 대해 주민등록 전입세대, 전기 사용량 등 분석 결과, 주거용으로 확인되는 경우 및 임대사업자 본인이 해당 사업장에서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환급세액 추징
- [4] 고소득 전문직·현금수입업종·신종업종 등의 매출신고 누락과 업무무관·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검증

- 또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입니다.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붙임 1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 ●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 ① 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 1~6. 30	예정신고	1. 1~3. 31.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 1~6. 30.	법인사업자
		1. 1~6. 30.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 1~12. 31	예정신고	7. 1~9. 30.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 1~12. 31.	법인사업자
		7. 1~12. 31.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
  -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1. ~ 12.31.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 ~ 1.25.까지 신고·납부
    - \* 다만, 7.1.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3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 ②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 ③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붙임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안내

### 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 모든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홈택스(<a href="http://www.hometax.go.kr">www.hometax.go.kr</a>)에서 회원 가입</li> <li>-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li> <li>· (개인) 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 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li> <li>· (법인) 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li> </ul> </li> <li>○ 접근방법 : 국세청 홈택스(<a href="http://www.hometax.go.kr">www.hometax.go.k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메뉴 선택</li> </ul> </li> <li>○ 이용시간 :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8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li> </ul> </li> <li>○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a href="http://www.nts.go.kr">www.nts.go.kr</a>)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gt; 부가가치세 &gt; 참고자료실</li> <li>※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gt; 부가가치세 &gt; 전자신고 요령(일반·간이)</li> </ul> </li> </ul>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 무실적자</li> <li>○ 접근방법 :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li> </ul> </li> <li>○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a href="http://www.nts.go.kr">www.nts.go.kr</a>)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gt; 부가가치세 &gt; 참고자료실</li> <li>※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gt; 부가가치세 &gt; 스마트폰 전자신고요령</li> </ul> </li> </ul>
우편신고 · 방문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시간 : 2020. 10. 26.(월) 18:00까지</li> <li>○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li> </ul>

## 2.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모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납부'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li> </ul> </li> <li>-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납부' → '세금납부' → '자진납부' 선택</li> </ul> </li> </ul> </li> <li>○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li> <li>○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li> </ul> </li> <li>○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 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li> </ul> </li> <li>○ 납부시간 : 07:00 ~ 23:30(연중 무휴)</li> </ul>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a href="http://www.giro.or.kr">www.giro.or.kr</a>, <a href="http://www.cardrotax.kr">www.cardrotax.kr</a>)</li> <li>○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li> <li>○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li> <li>○ 납부시간 : 00:30 ~ 23:30(연중 무휴)</li> </ul>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li> <li>○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할납부 불가, 납부시간은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li> </ul> </li> <li>○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li> <li>○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li> <li>○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li> </ul> </li> </ul>
세무서 (수납창구, 무인카드 수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납창구)* 현금, 신용카드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서 수납창구 직원이 인터넷 카드로택스에 접속하여 납부 대행</li> </ul> </li> <li>○ (무인카드수납기)* 신용카드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카드 납부 전용 단말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li> </ul> </li> </ul>



### 불임 3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No	구분	제공 항목(총28개)	제공일정	비고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0.10.14.	
2		신용카드 매출 → 추석 연휴로 자료수보 지연	20.10.15.	+2일
3		현금영수증 매출	20.10.1.	
4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20.10.15.	
5		수출실적 내역 (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20.10.11.	
6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20.10.14.	
7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20.10.14.	
8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 추석 연휴로 자료수보 지연	20.10.15.	+2일
9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20.10.1.	
10		현금영수증 매입	20.10.1.	
11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0.10.14.	
12	공제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20.10.1.	
13		재고납부세액	-	확정
14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20.10.1.	
15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확정
16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	확정
17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	확정
18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	확정
19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0.10.15.	
20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0.10.14.	
21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20.10.11.	
22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20.10.1.	
23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신고마감 후	
24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0.10.14.	
25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0.10.14.	
26		국고입금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0.10.15.	
27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0.10.15.	
28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	확정

불임 4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 [예시]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매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li><li>○ 직원이나 친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을 신고 누락</li><li>○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li><li>○ 수정 세금계산서 잘못 작성하는 사례</li><li>○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 금액을 신고 누락</li><li>○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li></ul>
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li><li>○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li><li>○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li><li>○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li><li>○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li><li>○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li><li>○ 사업용 신용카드와 그 밖의 신용카드를 중복으로 잘못 공제</li><li>○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정기 신고 시 중복으로 잘못 신고</li><li>○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안내</li></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매입금액 보다 높은 매출이 발생함에도 신용카드 매출만 신고하는 등 3개 과세기간 연속으로 일반환급 신고한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는 사례</li><li>○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li><li>○ 면세비율 증감에 따른 납부세액 재계산 안내</li></ul>



## 업종별 · 항목별 주요 안내자료

건설업	○ 산재보험에 가입된 건설공사 현황자료 성실신고 안내
건설업	○ 인테리어사업자 과세표준 대비 세금계산서 매출비율 분석
건설업	○ 인테리어 플랫폼사를 통한 공사업체 매출 성실신고 안내
건설업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아파트 시설공사 자료
건설업	○ 태양광발전기 설치사업자 토지공사 등 성실신고 안내
전문서비스업	○ 치과 병의원 미백 등 과세 치료항목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전문서비스업	○ 세무사 불복 수임료, 법무사 수입금액 등 성실신고 안내
전문서비스업	○ 성형외과 지역별 평균 신용카드 매출(건당) 분석자료 안내
임대업	○ 특수관계자 간 무상임대 등 성실신고 안내
임대업	○ 임차인 확정일자권리부 분석자료 안내
임대업	○ 건물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안내
음식업	○ 의제매입세액 공제 관련 면세 매입비율 분석자료 안내
운수업	○ 운수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이외 매입 과다자료 안내
숙박업	○ 숙박어플 운영사업자에 수수료 지급한 내역 안내
서비스업	○ 미용실 내부기준에 따른 봉사료 지급액 매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업	○ 크리에이터 콘텐츠 플랫폼수수료 지급 내역 안내
서비스업	○ 반려동물 장묘업 매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업	○ 숙박어플 및 체험마을 등 매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업	○ 배달대행 가맹사업자 수수료 지급내역 안내
서비스업	○ 스크린야구, 스크린골프 운영 사업자 매출 성실신고 안내
도·소매업	○ 오픈마켓 등 실사업자 판매(결제)대행자료 안내
도·소매업	○ 제로페이(zeropay)를 통한 매출액(결제금액) 안내
도·소매업	○ 주유소 사업자 면세유 매출액 안내
도·소매업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환전자료 등 매출 성실신고 안내
도·소매업	○ 장애인보장구 보조금 지급 내역 안내
도·소매업	○ 마스크 관련 매출 성실신고 안내
공통	○ 점대성·개인적 사용 등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성실신고 안내
공통	○ 통산 부가가치율 저조 사업자 신고 분석자료 안내
공통	○ 기타 현금매출 신고내역이 없는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공통	○ 대리납부 성실신고 안내

## 불임 5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 원스톱 조회서비스

1. 홈택스 로그인 후 팝업창 생성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 ● 일반 접근경로 (납세자)

1.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클릭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클릭
2.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 ● 일반 접근경로 (세무대리인)

1. 홈택스 로그인 후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2. '과세기간' 선택 후 '세무대리인 일괄조회' 클릭
3. '개별분석자료 제공'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하여 목록 확인

## 불임 6 코로나19 대응 관련 부가 분야 법령개정 주요 내용

### ①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조특법 § 108의4 신설)

- (감면대상)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  
\*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통장소
- (감면세액)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과 간이과세방식(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출  
한 세액(B)과의 차이금액(A-B)

A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 (신청방법) 세액감면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
- (적용기간) 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20년 한시적으로 적용(부칙 § 4)

### ②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적 상향(조특법 § 108의5 신설)

- (개정내용) 연매출 3천만 원 이상 4천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 '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
- (적용대상)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간이과세자  
①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 원 이상 4천800만 원 미만일 것

②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형장소

- (적용기간) '20년 1~12월 과세기간(1년) 한시 적용(부칙 § 5)

\* 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적용

### 불임 7 흠택스를 통한 신고안내문 및 예정고지세액 조회

- (신고 안내문 조회) 법인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흠택스에 접속하여 신고안내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MY흡택스"에 수록
  - \* 별도 서면 안내문 발송 제외

- (예정고지세액 조회) 개인 일반과세자는 흠택스 조회 메뉴\*를 통해 예정고지세액 조회 가능
  - \* 흠택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 특히, 예정고지가 제외된 세정지원 대상자의 경우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로 표시 (별도 서면 안내문 발송 생략)

### 불임 8 경영애로·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 주요 내용

-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신청시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

◦ 지원 대상

- (경영 애로)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한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구 분	지정일	지정기간 만료일	지정 지역	사유
고용위기지역 (고용노동부 고시)	'18. 4. 5.  '18. 5. 4.	'20. 12. 31  .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조선업 불황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산업통상자원부)	'18. 4. 5.	'22. 4. 4.	(전북) 군산시	
	'18. 5. 29.	'21. 5. 28.	(경남) 거제시 ·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해남군 · 영암군 · 목포시	

- (재난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선포일	재난 지역	사유
'18. 09. 17.	(전남) 완도 보길면, (경남) 함양읍 · 병곡면 (경기) 연천 신서면 · 중면 · 왕정면 · 장남면	태풍
'18. 10. 24.	(경북) 영덕군, 경주시 외동 · 양북면, (경남) 거제시 일운 · 납부면 (전남) 고흥군 동일면, 완도군 소안면 · 청산면	태풍
'19. 04. 06.	(강원) 강릉시 · 속초시 · 동해시 · 고성군 · 인제군	산불
'19. 09. 20.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흑산면	태풍
'19. 10. 10.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 · 영덕군	산불
'19. 10. 17.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 · 성주군, (전남) 진도군 의신면 (강원) 강릉시 강동면 · 옥계면 · 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태풍
'20. 03. 15.	(대구) 대구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	질병

- (추가 연장)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최초 연장 3개월 이후 1개월씩)에서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추가 연장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관련 관세 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2020. 10

- 2020.10.13.(화), 기획재정부는 덤픽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제도\* 보완·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51조~제62조, 시행령 제58조~제85조, 시행규칙 제10조~제31조

-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 그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반덤핑 협정 등)과 합치성을 제고하고,
  - 부과사례가 없어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계관세 관련 규정을 덤픽방지관세 규정에 준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20.10월 현재 운영 현황 : (덤핑방지관세) 16개 품목 20건, (상계관세) 無

-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기관인 무역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무역구제조치 절차 : (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 → (기재부) 부과 조치

- ①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이익 보호 강화

- 이해관계인(조사대상물품 공급자 등)에게 덤픽방지관세 등의 부과를 요청하는 신청인의 조사신청서, 최종판정 전 판정의 근거가 되는 가격정보 등 핵심적 고려사항 제공 등을 명시

- ② 재심사 신청 요건 및 조사절차 등 보완

- 기존에 부과 중인 덤픽방지관세 등에 대해 부과대상·덤픽률 등의 내용변경을 신청(재심사)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여 신청인·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

\* (현행)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요청 → (개정) 명확한 정보를 제시하여 요청

- 효과적인 산업피해 조사가 가능하도록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사 기간을 추가 2개 월 연장(최대 5개월→7개월)

\* (예) 코로나 등으로 해외 공급자에 대한 현지실사의 제한이 있는 경우 등

-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검증이 곤란할 경우 조사시 이용 가능한 자료에 대한 활용 절차를 법제화

### ③ 상계관세 규정 정비

-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 조사 절차(조사기간, 부과시한 등) 등을 현행 덤픽방지관세 절차에 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제 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비
  - \* 상계관세는 부과 사례가 없고, 관련 규정은 덤픽방지관세 규정과 달리 '08년 이후 개정사항이 없었음
- 이번 개정으로 덤픽방지관세 ·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산업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 WTO 분쟁 발생시 이해관계인의 방어권을 보장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화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20.10.13~11.22), 국무·차관회의 등 관련 개정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임

### 참고 1 경제 · 재정 여건

#### ①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이익 보호 강화

- ① 조사신청서 공개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공 시점 명확화
  - \* 조사개시 전 조사신청서 공개 금지(§ 59⑥, § 73⑥)  
조사개시 후 이해관계인에게 조사신청서 제공(§ 60③, § 70②, § 73③, § 84②)
- ② 비밀로 취급을 요청하거나 취급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 확대
  - \* 비밀취급 요청자료에 “서면으로 제출된 구두정보” 추가(§ 64②, § 78②) 비밀취급 자료에 “종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자료” 추가(규칙 § 15, § 27)
- ③ 구두정보의 증거력 인정절차 도입(§ 64⑧, § 78⑧)
  - \* 구두로 진술·협의한 내용은 7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 증거력 인정
- ④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공고 대상 확대(§ 71②, § 85②)
  - \* (현행) 원심 최종판정 → (개정) 원심 최종판정 + 재심 최종 판정

#### ② 재심사 신청 요건 및 조사절차 등 보완

- ① WTO 협정에 준하도록 재심사 요청요건 완화(§ 70①, § 84①)
  - \* (현행) 증빙자료를 첨부 → (개정) 명확한 정보를 제시
- ② 조사 비협조시 이용가능한 자료 활용절차 신설(규칙 § 15의2, § 27의2)
  - \* 활용시 주의의무, 설명기회 제공, 이용가능한 자료를 채택한 사유 설명의무 규정
- ③ 국내 산업피해 평가지표에서 ‘기술개발’ 을 제외(§ 63①, § 77①)
- ④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본조사 기간 2개월 추가 연장(§ 61⑦, § 75⑦)

### ③ 상계관세 규정 정비

#### ① 부과요청 및 조사의 전문성 제고

- \* 주무부장관은 상계관세 부과요청 전 관세청장에게 검토 요청 가능(§ 73②)  
무역위는 조사대상물품 품목분류에 대해 관세청장과 협의·선정(§ 74④)

#### ② 조사 및 부과절차를 덤핑방지관세 규정에 준하도록 정비

- \* 본조사 종결 및 재심사 개시 결정에 관한 사항 관보 게재(§ 75④, § 85④),  
부과시한을 덤핑방지관세 규정과 합치도록 변경(§ 75⑦)

#### ③ 신규공급자에 대한 부과절차 구체화(§ 79)

- \* 수입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조사 완료일까지 부과 유예

## 참고 2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제도 개요

### 1. 덤핑방지관세

- 덤핑방지관세(Dumping duty)란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 국내산업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로서,  
⇒ 국내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로 부과하는 관세
- 운영 현황 : 중국·일본 등에 대해 20건(16개 품목) 부과중
  - \* 주요 품목 : 스테인리스스틸 바·후판, H형강, 합판, PET 필름, OPP 필름, 플로트 판유리, 도자기질 타일, 아연도금철선 등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51조 ~ 제56조

### 2. 상계관세

-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란 외국 물품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아 수입되어
  -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 국내산업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로서,  
⇒ 국내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이하로 부과하는 관세
- 운영 현황 : 부과 사례 없음
- 관련 규정 : 관세법 제57조 ~ 제62조

# OECD/G20 IF, 디지털세 논의 경과 보고서 공개

- 기획재정부, 2020. 10

## [필라1·2 blueprint 공개]

- ◎ '20.10.8~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10차 총회(영상회의)를 개최하여 디지털세 장기대책 필라1·2 blueprint를 승인하고, '20.10.12일 이를 공개하였음

\* Inclusive Framework(IF)

: BEPS(다국적기업의 세원감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 이행을 논의하는 회의체(現 137개국)

- ◎ OECD/G20 IF는 회원국 간 의견과 코로나19 확산 등 영향으로 핵심사항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최종합의 도출을 향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 필라1·2 blueprint는 금년 1월 기본골격 합의 후 현재까지 진행된 세부사항 논의 경과를 담은 중간보고서임

## [필라1·2 blueprint 주요내용]

- ◎ 필라1·2 blueprint는 필라1·2의 구성요소를 구체화하고 구성요소별 의견수렴 상황과 미결 정치적·기술적 쟁점에 관한 이견 상황과 향후 논의 방향을 담고 있음(☞ <참고 1> 참조)

## [정부의 디지털세 논의 대응 현황]

- ◎ 우리 부는 '19.12월 디지털세 대응을 위한 조직을 보강하고, 기업,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함께 디지털세 민관 TF를 구성하여 국내쟁점 파악 및 논리 보완에 활용해 왔음
  - ※ '20년 민관 TF 회의 개최실적: 총 18회(서면회의 포함)
  - 또한, 금년 IF 운영위 및 실무작업반 회의에 전부 참석\*하여 우리 측 이해관계 반영을 위해 구두발언, 서면제출, 국제공조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대응해 왔음
  - ※ '20년 OECD-G20 IF 회의 참석실적: 총 27회(영상회의 포함)
  - 특히, 이번 필라1·2 blueprint 논의에 있어서는 우리 측 이해관계가 있는 쟁점에 관해 우리 의견을 반영하거나 추후 계속논의 가능한 근거문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음.

### [향후 일정 및 대응방향]

- 필라1·2 blueprint는 '20.10.14일 예정된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을 예정임
- OECD/G20 IF는 이번 blueprint 관련 요약문서에서 코로나 확산 등의 영향을 감안하여 최종방안 합의 시점을 당초 20년 말에서 '21년 중반으로 공식 연장하였으며,
  - blueprint에 기초하여 '21.1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기업 등 민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미해결쟁점은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계속하여 '21년 중반을 목표로 최종방안 합의를 추진할 계획임
- 우리 부는 필라1·2 최종 합의시까지 우리 측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공청회 및 후속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TF를 통해 blueprint 내용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측 쟁점별 대응방안을 검증·보완하여,
- 일관된 방향 하에 회의 참가·발언, 서면 제출, 기업·전문가 등을 통한 공청회 의견 제출, 국제 공조 등 다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임

### 참고 1 디지털세 필라1·2 blueprint 주요내용

#### 1 필라1·2 blueprint 주요내용

◇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모델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과세권 배분 및 이익 귀속 규칙 마련 논의

- ① (구성요소 구체화) 필라1의 핵심 구성요소를 ①Amount A ②Amount B ③조세 확실성으로 구분하고, 세부 구성요소 구체화



- (Amount A) 일정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초과이익 일정부분(시장 기여분)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

- (Amount B) 다국적기업 국외관계사의 기본적인 판매·홍보활동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고정율\*로 과세권 배분
  - \* 現 이전가격 과세체계(다국적기업의 관계사간 거래에 대한 과세체계)에서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 계산 표준화 → 집행·협력비용 절감 및 조세확실성 제고
- (조세확실성) 조세확실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분쟁예방 및 분쟁해결 절차 개발

[2] (적용대상) ①업종 기준과 ②규모 기준의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

- ① (업종 기준) ①디지털서비스사업(automated digital services) 및 ②소비자대상사업(consumer-facing businesses)을 구체적으로 정의

- (디지털서비스사업) 적용업종과 제외업종을 열거하되, 보통적으로 일반적 정의(자동화된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규정
- (소비자대상사업) 통상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재화서비스 공급
  - B2B 업종(중간재·부품 등 판매)은 적용 제외
  - 직접 및 간접판매(대리인·중개인 등 제3자, 프랜차이즈·라이센스 등을 통한 판매) 포함
  - 천연자원, 금융, 인프라건설, 국제항공·해운 제외

☞ (추후 논의사항) 구체적인 적용·제외업종, 단계적 도입(디지털서비스사업만 우선 적용)·세이프 하버(기업에 과세체계 선택 허용) 등

- ② (규모 기준) 행정 및 협력비용을 감안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만 적용

- ①글로벌 매출액 ②국외 적용업종 매출액 두 가지 기준 적용

☞ (추후 논의사항) 구체적인 기준금액\*, 단계적 도입방안(기준금액 단계적 하향조정) 등

\* OECD 사무국은 연 7.5억 유로(약 1조원, 국가별 보고서 제출 대상) 제시

[3] (과세연계점\*) 디지털서비스사업(최소매출 기준만 적용)과 소비자대상사업(최소매출 기준 상향 + 추가 기준 적용) 차별화 명시

\*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하고 지속적인 시장 참여를 나타내는 지표 → 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받을 자격이 있는 시장소재국 판단

- 소비자대상사업은 원격 사업활동 정도와 이익률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디지털서비스사업보다 엄격한 적용기준 마련

☞ (추후 논의사항) 최소매출 기준금액, 최소매출 지속기간 필요성, 구체적인 소비자대상사업 추가 기준\*, 개도국 고려방안 등

\* 시장소재국 내 물리적 실재, 상당한 매출(→시장참여 간주), 맞춤형·지속적 광고·홍보활동 등 다수 방안 논의 중

[4] (매출귀속 기준\*) 세부 업종별 복수 지표를 순위에 따라 적용

\* 과세연계점 판단의 전제로 글로벌매출이 귀속될 시장소재국(원천지국) 판단 기준

☞ (추후 논의사항) 구체적인 지표와 그 적용 순위, 지표 신뢰성·확보가능성 낮은 경우에 관

## 한 지침 등

⑤ (과세표준 산출)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세전이익을 기초로 산출(연결회계기준에 기반한 세전 이익에 세무조정 항목을 일부 반영)

- 업종별(디지털서비스사업 · 소비자대상사업 · 제외업종)로 구분 산출하되, 행정 및 협력비용 을 감안 구분 면제 및 완화 방안 마련

- 국내 손실공제와 별개로 Amount A 차원에서 손실 이월공제\*

\* 당해연도에 배분하지 않고 이월하여 후속연도에 이익발생시 공제(earn-out mechanism)

- ☞ (추후 논의사항) 구분(segmentation) 면제 · 완화 방안 구체화\*, 이익부족분(profit shortfall)\*\* 손실간주 여부 등

\* 소규모기업 구분 면제, 구분 필요성 검증, 공시 재무제표 활용, 업종간 이익률 차이가 기준 이하 인 경우 기업 선택 허용 등 논의 중

\*\* 이익이 기준 이익률에 미달하는 부분

⑥ (과세이익 배분) ①이익율 기준 ②배분율 ③배분지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시장소재국별 배분소득 결정

① A기업 매출 × (A기업 조정 후 세전이익률 - 이익율 기준) = A기업 초과이익

② A기업 초과이익 × 배분율 = 전체 시장소재국에 배분될 과세소득(시장기여분)

③ 배분대상 과세소득 × 배분지표 = 개별 시장소재국에 배분될 과세소득

- 디지털화 정도에 따른 차별화 논의, 현행 체계와 새로운 체계에 따른 시장소재국 배분소득 이중계산 방지 논의 등 반영

- ☞ (추후 논의사항) 구체적인 이익률 기준 · 배분율 · 배분지표, 차별화\* 및 이중계산 방지 여부 및 구체적인 방안\*\* 등

\* 업종별 차별화(디지털서비스사업에 낮은 통상이익률 또는 높은 배분율 적용), 원격매출 차별화(원격매출에 낮은 통상이익률 적용) 등 논의 중

\*\* 현행 체계와 새로운 체계에 따른 배분소득을 비교하여 부족분만 추가 배분하는 방안(판매·홍보 이익 세이프하버) 도입 논의 중

⑦ (중복과세 제거) 단계적 기준에 따라 Amount A 부담법인을 식별하고, 그 법인 소재국에서 소득 · 세금 공제\*를 통해 중복과세 제거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Amount A 부담법인 소재국이 선택 가능

- ☞ (추후 논의사항) Amount A 부담법인 식별기준 구체화\*, 중복과세 제거방법의 국내법 등과 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적용 등

\* OECD 사무국은 ①사업활동 ②이익율 ③시장관련성 ④비례적 배분의 4단계 기준 제시

⑧ (Amount B) 적용범위\*, 고정율 도출방법\*\* 등 논의 전진

\* 다국적기업의 국외관계사에 의한 기본적인 판매·홍보활동에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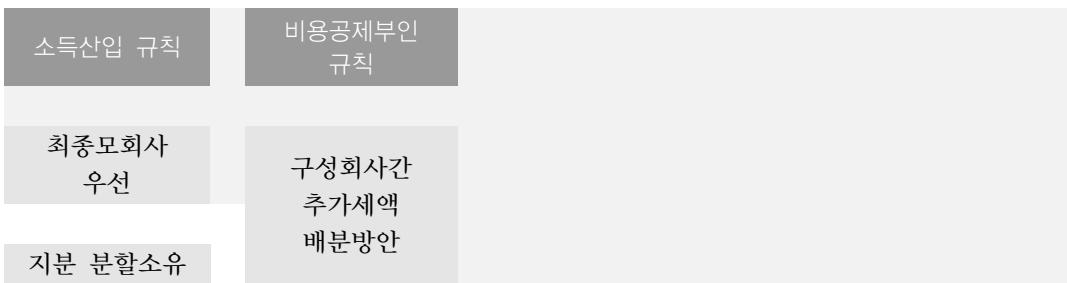
- \*\* 지역·산업별 구분에 따라 벤치마킹 분석을 통해 도출  
☞ (추후 논의사항) 적용범위 확정, 지역·산업별 구분 및 고정율 구체화, 시범 프로그램(pilot program) 운영 여부 등
- ⑨ (조세확실성) Amount A 관련 분쟁 예방·해결 절차 골격\* 및 Amount B 관련 분쟁 예방·해결절차 개선\*\* 논의  
\* 신고 표준화·일원화(대표 과세당국 신고 및 정보교환), 사전 확정절차(기업의 신청, 대표 과세당국 예비심사, 1·2차 패널의 검토 및 결정) 등  
\*\* 강제력·구속력 있는 분쟁해결 방안 마련 등  
☞ (추후 논의사항) 패널 구성, 구속력 확보 방안 등

## 2 필라2 blueprint 주요내용

◇ 미해결 BEPS(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공격적 조세회피) 문제 해결을 위한 세원잠식방지 규칙(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논의

- ① (구성요소 구체화) 필라2의 핵심 구성요소를 ①세원잠식방지 규칙 ②원천지국과세 규칙 ③규칙 간 조정(적용순위 등)으로 구분
- 세원잠식방지 규칙은 다시 ①소득산입 규칙(세액공제전환 규칙) 및 ②비용공제부인 규칙으로 구분하고, 그 특별 규칙도 설명
  - 각 핵심 구성요소의 세부 구성요소도 구체화

세원잠식방지 규칙	특별 규칙	원천지국과세 규칙	규칙 간 조정
적용범위		적용범위	적용순위
실효세율 계산	단순화된 소득산입 규칙		조약과의 관계
손실 이월공제		적용요건	
적용 예외	독립기업		조정
실효세율 계산 단순화		조정	분쟁 예방



② (핵심쟁점 명시) 적용 예외, 실효세율 합산 범위, 규칙 적용순위, 최저한세율 등은 국가간 이견이 커서 정치적 합의 필요

③ (적용범위) 다국적기업집단과 그 구성기업에 적용

- (제외기업) 투자펀드 · 연금펀드, 국가기관 · 국제기구 · 비영리단체 등
- (규모기준) 직전 회계연도 글로벌매출 7.5억유로 미만(약 1조원) 다국적기업집단은 적용 제외
- ☞ (추후 논의사항) 해운업 적용 제외 여부, 규모기준 미충족 기업에 대한 거주지국의 재량 인정 여부 등

④ (실효세율 계산) 해당국가 실효세율을 계산하여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부분을 추가세액 (top-up tax)으로 상대방국가에서 과세

- 실효세율 = 대상세액 ÷ 과세소득(과세표준, 연결회계기준에 기반한 세전이익에 세무조정 항목을 일부 반영)
- 추가세액 = 과세소득 × 추가세율(최저한세율 - 실효세율)

- (손실 이월공제) 손실은 기간제한 없이 이월공제 허용

- 최저한세 초과세액은 당해연도 및 이후연도에 소득산입규칙에 따른 세액에서 공제(IIR tax credit)

☞ (추후 논의사항) 실효세율 계산 범위(blending)\*, 실효세율 계산 단순화 방안\*\* 추가논의, 최저한세율 구체화 등

\* OECD 사무국은 국가별 구분 계산(jurisdictional blending) 제안

\*\* ①국가별 보고서 활용 ②최소이익 규정(de minimis exclusion) ③특정연도 실효세율을 수년간 사용 ④BEPS 위험이 낮은 국가 적용 제외(white list) 등 방안 논의 중

⑤ (적용 예외) OECD 사무국은 실질 사업활동에 기반한 정량적 기준에 의한 적용 예외 (formulaic substance-based carve-out) 제안

- 해당국가 내 실질 사업활동\*에 고정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 → 실질 사업활동에 대한 최저한세 부과 방지

\* OECD 사무국은 실질 사업활동 기준으로 급여(인건비)와 유형자산(감가상각비) 제안

☞ (추후 논의사항) 고정율 구체화, 적용 예외 인정방식 및 정량기준 보완 등 추가논의 필요

[6] (소득산입 규칙) 저세율국 소재 국외관계사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는 그 거주지국에 지분율만큼 추가세액 부담

\* 저세율국가 소재 국외관계사 추가세액을 합산하여 모회사에서 부담

※ (세액공제전환 규칙) 저세율국가에 국외관계사가 아닌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모회사는 그 거주지국이 소득면제 방식을 채택한 경우 소득산입 규칙 적용 불가

→ 소득면제 방식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여 추가세액 부담

○ (최종모회사 우선) 다국적기업집단의 최종모회사에 우선 적용 → 적용이 어려우면 아래 중간모회사에 적용(top-down approach)

☞ (추후 논의사항) 지분 분할소유시 적용 방안\* 등

\* 최종모회사가 중간모회사 지분을 제3자와 분할소유하는 경우 → OECD 사무국은 최종모회사가 아닌 중간모회사가 소득산입 규칙을 적용하는 방안 제안

[7] (비용공제부인 규칙) 저세율국 소재 구성회사에 비용으로 공제되는 지급금을 지급한 다른 구성회사는 추가세액 부담

○ (소득산입 규칙 우선적용) 비용공제부인 규칙은 소득산입 규칙의 보완적 규정(backstop)

→ 저세율국 소재 구성회사를 직·간접 지배하는 국외 관계사에 소득산입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

☞ (추후 논의사항) 기술적 사항(동 규칙이 다수의 구성회사에 적용되는 경우 구성회사간 추가세액 배분방안, 배분한도 등) 중심 논의 필요

[8] (원천지국과세 규칙) 소득의 저세율국 이전을 통한 원천지국 세원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적 규칙

○ 저세율국 소재 국외관계사에 대한 지급금에 대해 원천지국에 최저한세율까지 추가세액 과세권 인정

- 저세율국 여부는 실효세율이 아닌 명목세율로 판단

☞ (추후 논의사항) 거래·기업규모 기준 도입 여부 및 금액, 관계사간 거래 제한 여부\*, 지급금의 범위 등 추가논의 필요

\* OECD 사무국은 관계사간 지급금에만 적용 제안

\*\* OECD 사무국은 이자, 사용료, 고위험 서비스대금(무형자산 사용료·보험료 등) 등에 제한 제안

[9] (규칙 적용순위) 규칙의 중복적용에 따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OECD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규칙 적용순위 및 조정 제안

- (원천지국과세 규칙 - 다른 필라2 규칙) 원천지국과세 규칙 우선 적용 → 동 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은 다른 필라2 규칙 관련 실효세율 계산시 반영
- (다른 필라2 규칙- 기존 규칙) 기존 규칙(CFC·원천징수세액) 우선 적용 → 기존 규칙에 따른 세액은 다른 필라2 규칙 관련 실효세율 계산시 반영
- (소득산입 규칙- 비용공제부인 규칙) 소득산입 규칙 우선 적용
- (소득산입 규칙 간) 최종모회사 우선 적용(top-down approach)
- (세액공제전환 규칙) 소득산입 규칙에 보완적으로 적용(→ 다른 규칙과의 순위는 소득산입 규칙과 동일)

☞ (추후 논의사항) 규칙 적용순위 및 조정은 추가논의 필요

## 참고 2 디지털세 관련 Q&A

### ① 이번에 공개되는 필라1·2 blueprint의 합의 내용은?

- 필라1·2 blueprint는 핵심사항 등 합의가 아닌 필라1·2의 전반적인 체계와 그간의 논의 경과를 담고 있음
  - 주요 구성요소에 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소개하고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최종합의안은 아님
  - blueprint는 그간의 디지털세 논의 경과에 관한 중간보고서 성격으로, 후속 논의의 기초로 활용될 예정

### ② 금년 1월에 있었던 합의내용과 필라1·2 blueprint가 달라진 점은?

- 금년 1월에는 디지털세 기본골격에 관해 합의한 것으로,
  - blueprint는 기본골격에 기반한 세부사항 논의 경과를 상세히 소개
  - 특히, 필라1·2의 구성요소를 구체화하고, 구성요소별 의견수렴 상황과 함께 미해결 쟁점 및 그에 관한 이견을 소개하고 추후 논의가 필요한 사항도 명시하고 있음

### ③ 당초 금년 말 예정이던 최종안 합의가 ‘21년 중반으로 미뤄졌는데 합의 관련 전망은?

- OECD/G20 IF는 금년 1월 디지털세 기본골격 합의 후 이에 기반하여 최종합의안 도출을 위해 세부 논의를 지속

- 코로나19 확산 등 영향으로 핵심사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정치적·기술적 세부사항 논의에서 상당한 진전
- 다만, 최종합의 시점 연장은 코로나19 확산, 美 대선 등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한 것으로,
  - IF는 향후에도 필라1·2 blueprint에 기반하여 공청회 개최, 미해결쟁점 추가논의 등을 통해 '21년 중반 최종방안 합의를 추진할 계획임

**(4) 미국이 디지털세 협상의 중단을 선언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한가?**

- IF 회의에서 미국 대표는 디지털세 협상에 계속 충실히 참여(fully engaged)하겠다는 의사 표명
- 현재 미국, EU 국가를 포함 대부분 IF 회원국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종안 합의를 위해 노력 중
- 특히, 미해결쟁점에 관해서도 절충안 등을 통해 합의점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5) 언제쯤 디지털세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 최종안이 합의되면 이후 다자조약 체결·비준, 국내법 개정 등 규범화 작업에 최소 2-3년 소요 예상
- 따라서, 내년 중반에 최종안이 합의되어도 실제 과세까지는 상당 기간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

**(6) 디지털세 논의에 대한 우리측 대응 현황은?**

- 정부는 디지털세 국제논의 과정에서 우리측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적극 대응 해왔음
  - '19.12월 담당국장(소득법인세정책관)이 디지털세 논의를 주도하는 IF운영위 위원에 선임되었고 전담대응팀(디지털세대응팀)도 구성
  - 보강된 조직을 통해 운영위 및 실무회의에 전부 참석<sup>\*</sup>하여 구두발언, 서면제출, 국제공조 등 다각적으로 적극 대응 중
    - \* '20년 IF 회의 참석 실적(영상회의 포함) : 총 27회
  - 민간기업, 전문가, 관계기관 등으로 디지털세 민관TF를 구성하여 필요시 쟁점 파악 및 논리 보강 등에 활용<sup>\*</sup>
    - \* '20년 민관 TF 회의 개최 실적(서면회의 포함) : 총 18회



⑦ 디지털세 국제 합의 이전에 디지털서비스세(DST : digital service tax)\* 도입 관련 정부입장은?

- \* 기업의 소득이 아닌 디지털서비스 매출액에 일정세율로 과세하는 단기적인 방안으로 일부 EU 국가 등에서 개별적으로 도입

● 디지털세 논의는 국가간 과세권의 적정한 배분에 관한 것이므로 국제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 디지털서비스세 등 일방적 과세방안은 무역분쟁 우려 및 산업 파급효과, 이중과세 문제 및 전가 가능성 등 고려시 도입에 신중할 필요

⑧ 디지털세 도입시 국내 세수 영향은?

● 디지털세 도입시 국내 세수 영향은 세부변수에 관한 결론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

○ 현 상황에서 전체 법인세수 및 기업 세부담 등에 대한 국내 영향의 정확한 추정은 곤란

⑨ 디지털세 도입으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 정부는 디지털세 논의 과정에서 세수 확보와 함께 우리 기업의 부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적극 대응해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 대응할 계획임

● 현재 IMF도 필라1·2에 관해 납세협력비용 최소화에 관해 논의하고 있으며

○ blueprint에도 다양한 납세협력비용 감소방안을 담고 있음

⑩ 디지털세 도입에 따라 국내 디지털 기업 성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없는지?

● 우리 디지털 기업들은 외국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디지털세 필라1의 적용범위가 적을 것으로 예상됨

○ 향후 기업의 성장에 따라 적용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나 필라1은 과세권 재배분에 관한 것이므로 개별기업 세부담 증가는 원칙적으로 중립적

⑪ 제조업이 디지털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소비자대상사업도 디지털세 적용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일부 국가 제안에 따라 `20.1월 기본골격 합의안에 포함

○ 소비자대상사업도 시장에 물리적 접근 없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시장 참여 및 사업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

- 소비자대상사업이라도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디지털세가 적용되며, 세수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반드시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12) 제조업 등에 대한 국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향?

- 소비자대상사업으로 확대하는 점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나, 디지털서비스사업과의 업종별 차별화(digital differentiation)\*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  
\* 디지털화 정도 차이를 감안, 디지털서비스사업에 비해 소비자대상사업에 대해 엄격한 과세기준 적용
- 아울러, 시장 소재지국에 적정한 세금을 내는 기업들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모기준, 과세근거, 통상이익률, 이중계산 방지 등의 세부논의에서 적극 대응 중

# 회계개혁 시장안착 지원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금융감독원, 2020. 10

- ◆ '20.10.6(화)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
  - ① 법률에서 정한 재무기준 감사인 지정회사와 기준 시행령상 지정회사가 상당부분 중복됨을 감안, 시행령상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삭제하여 기업 부담을 일부 완화
  - ② 기업과 감사인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규정을 마련
  - ③ 외부감사 대상 기준 범위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기업 등이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

## 1 개요

- '20.10.6일(화)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직권지정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회계개혁 시장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로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삭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마련 등의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 2 주요 내용

- ①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삭제(안 제14조)
  - (현행) '18.11월 외부감사법이 개정되면서 재무상태가 악화된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직권지정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 상장회사로 3년 연속 ①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은 경우 또는 ②영업이익이 0보다 작은 경우 또

는 ③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미만인 경우

- 이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와 기준 시행령상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회사\*가 상당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 상장회사로 직전연도 ①부채비율 200% 초과 그리고 ②업종평균 부채비율의 1.5배 초과 그리고 ③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경우
- \* 시행령상 지정 회사 143개사 중 95개사가 법률상 지정 사유에도 해당('20년 기준)
- (개정) 시행령상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삭제하여 기업 부담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 ②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규정 마련(안 제23조)

- (현행)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기업과 회계법인) 간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 총 15명(회사측 5명, 금융감독원장 추천 1명, 회계법인측 5명 및 회계정보이용자측 4명)으로 구성(☞ 이 중 회계법인측 5명 및 회계정보이용자측 4명 등 총 9명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위촉) → 별도 근거없이 위원 과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개정) 기업과 감사인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규정을 마련하여 의사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③ 외부감사 대상 기준 관련 조문 정비(안 제5조)

- (현행) 외부감사 대상 기준 관련 조문의 부정 표현 사용\* 등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 \* ①자산 120억원 미만, ②부채 70억원 미만, ③매출액 100억원 미만, ④종업원수 100명 미만 4 가지 기준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됨
- (개정) 외부감사 대상 기준 범위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기업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 ①자산 120억원 이상, ②부채 70억원 이상, ③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종업원수 100명 이상 4 가지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됨

## 3

## 시행일정 및 기대효과

-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금번 개정으로 기업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회계개혁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산재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0.6.~11.15.)

- 고용노동부, 2020. 10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범위 확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기회 확대', '업무상질병 판정의 신속·공정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2020.10.6.~11.15.) 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필요성이 높은 특고 산재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산재근로자가 보다 쉽고, 빠르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전문가, 주요 노사단체 등 이해 당사자와의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 \* 「플랫폼기반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징수방안 연구」(노동연구원, '19)
    - \*\* (특고 직종 확대) 주요 노사단체, 정보기술(IT) 분야 사업주단체, 노조, 대표기업, 종사자 등 협의 (업무상 질병 판정의 신속·공정성 강화) 주요 노사단체 협의
- 이번에 입법예고한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 확대
    - 특고 특례적용 제도 도입('08.7.) 이래 적용 직종을 지속 확대하여 현재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고 있다
      - \* ① 보험설계사 ② 골프장캐디 ③ 학습지교사 ④ 건설기계조종사 ⑤ 택배기사 ⑥ 퀵서비스기사 ⑦ 대출모집인 ⑧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 대리운전기사 ⑩ 방문판매원 ⑪ 방문강사 ⑫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⑬ 가전제품 설치기사 ⑭ 화물차주
    - 특히 최근에는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산재보험 적용 특고 범위를 분야별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 \* ('19.1.1.) 레미콘기사 → 지게차, 굴삭기, 덤프트럭 등 27개 전체 건설기계기사(11만명)

- \*\* ('20.7.1.)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27.4만명)
- 이번에는 정보기술(IT) 분야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약 6.6만명)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신규 지정하며, 사업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1.7.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참고]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범주

- (정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 ▶ (소프트웨어 산업)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그 밖에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예 : 패키지소프트웨어, 정보기술(IT)서비스, 게임소프트웨어,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 ▶ (소프트웨어 기술자) 정보기술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정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
- (주요 업무)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기술(IT) 아키텍처·프로젝트 관리·컨설팅·품질관리 등 업무 수행

## ②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 기간 확대

- 현재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 최저임금 상당액의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경과~3년 이내 신청 시 최저임금 50%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만 지급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취업여건 악화, 직업훈련 중단 반복 등을 고려하여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에도 최저임금 상당액의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 ③ 업무상 질병 판정의 신속·공정성 강화

- 현재 특별진료기관의 진찰(이하, '특별진찰') 또는 전문기관의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게 나온 사건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다 보니 불필요하게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 이에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게 나온 사건,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게 나온 사건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결정을 도모한다.
- 한편 근로복지공단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결권이 없어 소위원회 검토 결과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다시 심사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 이에 산재보험법령에 소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안건 중 일부 안건은 소위원회가 자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권한을 명확화한다.



- 이재갑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 보호 범위 확대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라면서,
  - "앞으로도 분야별·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상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쉽고 편한, 빠르고 공정한 산재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지속 발굴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http://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www.mois.go.kr](http://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0월 12일 (월)	10월 13일 (화)	10월 14일 (수)	10월 15일 (목)
미 달 러 (USD)	1156.20	1148.30	1149.50	1145.70
일 본 엔 (JPY)	1094.63	1090.04	1089.68	1089.38
영 국 파 운 드 (GBP)	1507.05	1500.25	1486.76	1490.73
캐 나 다 달 러 (CAD)	880.58	875.66	874.64	871.29
홍 콩 달 러 (HKD)	149.19	148.17	148.32	147.83
위 안 화 (CNH)	171.73	170.93	170.31	170.05
유 로 화 (EUR)	1366.45	1356.54	1349.92	1345.57
호 주 달 러 (AUD)	835.87	827.75	822.98	817.86
싱 가 폴 달 러 (SGD)	853.57	846.24	845.22	843.67
말레이시아링기트 (MYR)	279.41	276.97	277.52	276.04